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의안번호 제35호 2001. 10. 10)

총무위원회
2001. 10. 22

1. 심사경과

- 가. 2001. 10. 10 사천시장 제출
- 나. 2001. 10. 10 총무위원회 회부
- 다. 2001. 10. 22 사천시의회 제59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상정

2. 제안설명 요지(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유한석)

가. 제안이유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중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조항을 보완 또는 삭제하여 체육시설물의 원활한 관리와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함.

나. 주요골자

- (1) 관람료의 결정을 민간의 자율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11조)
- (2)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사유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한 때』를 행정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우려되므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쳤을 때』로 완화하고 『허가취소·정지로 인한 납부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다른 조항과 중복되므로 삭제함.(안 제21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성호영)

- 이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전용 사용자가 유료관람권을 발행할 때 사전에 관람료를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체육시설 사용 허가·취소 사유를 명백히 하였습니다.
-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 시책의 일환으로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과도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 없음